

『도로교통법』 일부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630
------	-----

2009년 2월 20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9월 11일 남재경 의원 외 13명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9월 18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교통위원회(2009년 2월 20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유인물로 대체)

가. 제안이유

- 지금현재 단속권한을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권이 있으며.(※2006.7.19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·군공무원에게 단속권 부여) 서울시 위임사무조례를 통해 구청장에게 주차위반 단속권과, 과태료부과·징수권을 일부위임하고 있음.(※2007.4.27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구·군공무원에게 단속권 위임)
- 도로교통법상 자치구 공무원의 단속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조례로 소극적인 도보단속으로만은 위임 기동력이 떨어져 대중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효과가 미흡함
- 인력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증가하는 위반차량 및 민원해소에 한계가 있음
- 지난 2008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경찰청장(교통안전담당관)에게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한바 있음.

나. 주문

서울특별시의회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43조,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과 위임·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일원화 및 업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행정 확보 및 자치구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의 내실화를 다지고자 다음과 같이 법률개정을 건의한다.

「도로교통법」, 「도로교통법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도로교통법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제143조(시·군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) ①시·군공무원.....의 ①항을 시·군.구공무원.....으로 개정

② 시·군공무원.....의 ②항을 시·군.구공무원.....으로 개정

④ 시·군공무원.....의 ④항을 시·군.구공무원.....으로 개정

-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(위임 및 위탁)

-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.

3.(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)중 괄호안의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

다. 이송처 : 국회의장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안석수)

□ 단속업무 이관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

- 동 건의안은 「도로교통법」 제143조(시·군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)

와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6조(위임 및 위탁)제2항의 개정을 통해서 자치구청장도 버스전용차로 운행위반 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- 현행 『도로교통법』에는 전용차로 운행위반에 대한 자치구 공무원의 단속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『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』에서 허용하고 있는 도보단속만으로는 기동력이 떨어져 단속효과가 저하된다는 점과 현행 인력단속만으로는 증가하는 위반차량 및 신고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, 그리고 서울시가 지난 8월 14일 동 법의 개정 건의를 경찰청에 요청(도로행정담당관-21895)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동 법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.

□ 현행 조례의 위법성 해소측면에 대한 의견.

- 현행 「도로교통법」은 “전용차로 운행 위반단속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”를 서울시장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, 동 법은 서울시장이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
※ 참고 : 『도로교통법』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■	『도로교통법』 제147조 (위임 및 위탁) - 전략 -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<u>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</u>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 - 후략 -
■	『도로교통법시행령』 제86조 (위임 및 위탁) - 전략 -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<u>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.</u> 1. 제12조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(구 및 군 소속공무원에 한한다)의 임면권 및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차에 대한 조치권한 2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권한 및 동조제3항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 관련 조치·교육에 관한 권한 3.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(법 제32조(정차 및 주차금지) 내지 제34조(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제한)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). - 후략 -

서울시는 대통령령에서 “전용차로 운행 위반단속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”를 위임가능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『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』를 통해 구청장에게 동 사무를 위임해 운용해 온 것은 위법성의 소지가 있는 바 상위법의 개정건의를 통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는 업무의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 다만 향후에는 상위법의 근거없이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 주요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※ 참고 :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

주관부서	사무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도로행정 담당관	1. 자치구 관할 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무	○ 「도로교통법」 제143조, 제161조	구청장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 5. 토론요지 : 없음
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 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-